

예산총칙

201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92,588,771	8,777,663
일반회계	271,703,665	8,151,110
특별회계	20,885,106	626,553
기타특별회계	20,885,106	626,55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422,581	72,677
수질개선특별회계	9,793,810	293,81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05,000	18,150
의료급여특별회계	191,544	5,746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2,790,850	83,726
주택사업특별회계	825,856	24,776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373,852	11,216
농공단지관리특별회계	30,000	900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3,159	995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3,645,752	109,373
기반시설특별회계	172,702	5,18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33,525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